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최교진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하여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음. 이를 고려하여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원은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「교육공무원법」이 개정(법률 제21656호, 2026. 5. 19. 공포, 11.20. 시행)됨에 따라,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,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(안 제7조의6제1항 신설)

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첨단(신기술) 분야 및 기초학문 등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문 분야로 정함.

나. 겸직허가 절차 및 기준(안 제7조의6제2항 신설)

대학의 장은 외국대학 교원에 대한 겸직 허가 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 허가를 하도록 하고, 이 경우 허가의 필요성, 직무상 알게된 비밀의 누설 및 사적 이용 금지 의무 부가에 관한 사항, 교원 연구실적물 및 관련 지식재산권의 귀속·배분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교육·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검토하도록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0. 0. ~ 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6(외국대학 교원의 겸직허가 기준 등) ① 법 제19조의3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첨단(신기술)분야
2. 그 밖에 기초학문 등 대학의 장이 교육·연구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

② 대학의 장은 법 제19조의3에 따라 외국대학 교원에 대해 겸직허가를 하려면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
1. 허가의 필요성
2.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외국대학 또는 제3자에게 누설 및 사적 이용 금지 의무 부가에 관한 사항
3. 교원 연구실적물 및 관련 지식재산권의 귀속·배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교육·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7조의6(외국대학 교원의 겸직허가 기준 등) ① 법 제19조의3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첨단(신기술)분야</u> <u>2. 그 밖에 기초학문 등 대학의 장이 교육·연구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</u> <u>② 대학의 장은 법 제19조의3에 따라 외국대학 교원에 대해 겸직허가를 하려면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</u> <u>1. 허가의 필요성</u> <u>2.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외국대학 또는 제3자에게 누설 및 사적 이용금지 의무 부가에 관한 사항</u> <u>3. 교원 연구실적물 및 관련 지식재산권의 귀속·배분에 관한 사항</u> <u>4.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</u>

	<u>교육·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</u> <u>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</u> <u>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대학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938